

김정일 행정법 강의계획서

“생소한 행정법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이론까지
알기 쉽게 이해위주로 진행합니다.

답안작성의 기본이 되는 행정법의 전체흐름을 정확히 학습하고,
사례에 대한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법학 입문자의 필수 과정!”

■ ■ 담 당 김정일 변호사

- 사법시험 제40회 최종합격
- 현 법무법인 백범 대표변호사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행정법특강강사

■ ■ 강의일정 2020년 3/9(월) ~ 4/4(토), 총 24회

■ ■ 강의 업로드 [강의 진행 다음날 오후에 동영상 강의로 업로드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권고지침을 준수하여, 안정 시기라고 판단될 때까지 강의는 촬영 후 동영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차단하여 수강생 여러분의 건강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이오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 ■ 강의교재 ▶ 주교재 : 행정법강의(박균성, 2020년판, 서점구매, 단 2019년판이 있으시면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 부교재 :

- 교과서단권화자료(무료제공, 박균성교수님 책에 빠진 부분이나 소수설로 결론 내린 부분을 보충하여 완벽한 단권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 자료만 보충하시면 행정법에 대한 다른 교수님들의 저서를 모두 본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수님들의 저서를 참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예비순환용 행정법사례자료 및 최신판례자료(무료제공, 박균성교수님 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출제가능한 최신판례와 사례문제를 요약정리하여 나누어 드립니다.)
- 행정법사례풀이자료(무료제공, 예비순환 강의 후 이 자료는 반드시 10번 정도 반복하셔야 합니다.)
- 행정법 핵심쟁점 암기자료(무료제공, 실제 5급공채 2차시험에서 답안지에 서술할 분량을 답안지형식 그대로 작성 후 나누어 드립니다.)
- 행정법 들어가기 자료(무료제공, 예비순환 때는 이 자료를 매일 반복하여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자료를 얼마만큼 반복하느냐에 따라 수험생분들의 고득점 달성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복습자료 및 기출문제자료(무료제공, 이번 예비순환에서 암기하여야 할 내용은 이 자료입니다. 예비순환 강의가 끝난 후 행정법 복습하실 때는 이 자료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 강의특징

1. 5급공채 시험대비에 필요한 행정법 이론을 교수님 교과서를 통해 심도 있게 학습하는 입문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교과서를 통해 주요이론의 습득은 물론 각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연결성 있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논리적인 답안작성을 위한 기본 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서에서 수험적합적인 내용들을 취합한 기본서 단권화 정리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단권화가 가능합니다.
3. 기본이론을 적용하여 연습할 수 있는 사례자료를 통해 이론의 이해와 사례풀이를 위한 연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수강생의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답안작성 관련 중요한 사항도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세한 이론의 설명과 더불어 답안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 강의진행

- 예비순환 강의목표는 기본서의 정확한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즉, 법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행정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례문제를 통해 기본서에 기재된 판례와 학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등 기본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 따라서 이번 예비순환은 기본서의 완벽한 해설을 통해 처음 행정법을 접하는 수험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원론강의를 통해 행정법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맞본 수험생들도 사례문제풀이를 통해 이해강도를 높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 그리고 2019년 5급 공채시험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제가 강의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그대로 시험문제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
 - 모든 강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및 기타 요청사항은 다음카페 '5급공채 행정법 고득점을 위하여'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 심층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카페에 오셔서 심층상담을 요청하신다는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일정을 정하여 심층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배부하는 모든 무료자료는 위 카페의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강의는 기본서 해설(90%), 최신판례해설 및 사례문제풀이(1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21년의 오랜 강의경력과 실제 사법시험을 공부하여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행정법이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또 행정법이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해야만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한 강의로 법학이라는 학문의 즐거움을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 최근 5년간 행정고시 행정법 출제문제에서도 본 바와 같이 단순한 암기나 대충 공부한 것만으로는 절대 합격점수에 도달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행정법 전체 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논문수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주제
■ 제 1 회	3월 9일(월)	법학의 기초이론
■ 제 2 회	3월 10일(화)	행정법의 전체체계, 행정법 사례풀이방법, 실질적 의미의 행정, 통치행위, 법치행정
■ 제 3 회	3월 11일(수)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 4 회	3월 12일(목)	행정법의 일반원칙 II, 행정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무수탁사인
■ 제 5 회	3월 13일(금)	행정행위의 효력
■ 제 6 회	3월 14일(토)	공권의 확대화경향(제3유형에서의 원고적격충족여부)
■ 제 7 회	3월 16일(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극적 공권(협회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제 8 회	3월 17일(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행정법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 9 회	3월 18일(수)	행정입법 I
■ 제 10 회	3월 19일(목)	행정입법 II, 행정계획
■ 제 11 회	3월 20일(금)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종류
■ 제 12 회	3월 21일(토)	행정행위의 종류 II,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 제 13 회	3월 23일(월)	행정행위의 하자 I
■ 제 14 회	3월 24일(화)	행정행위의 하자 II
■ 제 15 회	3월 25일(수)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의 자동결정
■ 제 16 회	3월 26일(목)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제 17 회	3월 27일(금)	행정절차법(처분절차,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정보공개제도
■ 제 18 회	3월 28일(토)	국가배상 I
■ 제 19 회	3월 30일(월)	국가배상 II, 손실보상 전반
■ 제 20 회	3월 31일(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I
■ 제 21 회	4월 1일(수)	행정소송 II
■ 제 22 회	4월 2일(목)	행정소송 III
■ 제 23 회	4월 3일(금)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 제 24 회	4월 4일(토)	경찰행정법, 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 토지행정법, 공용부담법, 경제행정법, 환경행정법

※ 항상 행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복습자료1 - 법률유보원칙

중요도	B
목차 및 암기키워드	<p>I. 의의 일정영역에서 행정작용할 때는 작용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p> <p>II. 근거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 기본권보장 원칙</p> <p>III. 적용범위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등이 대립하나 다수설과 독일 판례, 우리나라 현재는 ()을 취하고 있다.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범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영역과 ()영역이 있다고 한다. ()은 모든 내용을 의회가 정하여야 하며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금지된다.</p> <p>IV. 효과 - 위헌, 위법</p>
관련된 기출문제 또는 판례문제	<p>환경부장관은 최근 대기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상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를 50%이하로 줄이는 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비 및 생산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하였다.</p> <p>이에 자동차생산업체인 갑회사는 100억을 투자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50%이하로 줄였고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100억 보조금지급결정을 받았다.</p> <p>그로부터 6개월 후 갑회사와 경쟁업체인 을회사도 100억을 투자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50%이하로 줄인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갑회사가 신청한 때와는 달리 4대강사업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 등이 위협을 받고 있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환경부 예산을 장기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보조금지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을회사의 신청을 반려하였다(갑회사와 을회사의 연도별 매출은 약 100조이다).</p> <p>환경부장관의 갑회사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가?</p>

복습자료2 - 비례원칙

중요도	A
목차 및 암기키워드	<p>I. 의의 행정청이 행정작용시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p> <p>II.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등</p> <p>III. 내용 가. 1. 적합성 원칙 행정작용은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나. 2. () 원칙 행정작용은 목적달성에 적합한 최소침해수단이어야 함 다. 3. () 원칙 행정작용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커서는 안됨.</p> <p>2. IV. 효과 - 위헌, 위법 비례원칙에 반한 법률, 법규명령, 조례규칙 -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으로 위헌 비례원칙에 반한 구체적 공법작용 - 위법</p>
관련된 기출문제 또는 판례문제	<p>'미레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갑은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관할 구청장 을로부터 2012. 2. 3.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갑은 2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가중처벌을 우려하여 2012. 2. 3.자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2012. 4. 25. 관할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식별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 전력이 없으며 청소년 선도 모범표창을 수차례 받은 점, 그리고 영업정지로 인해 수입이 없게 되면 암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 조달이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구청장 을의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위법한가? (2013년 입법고시)</p>

복습자료3 - 자기구속원칙

중요도	A
목차 및 암기키워드	<p>I. 의의 행정청이 행정의 자유영역에서 선행관행이 있는 경우 선행관행과 동일한 행정작용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p> <p>II. 근거 다수설 -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 평등원칙과 비례원칙</p> <p>III. 적용요건</p> <p>가. 1. 행정의 자유영역일 것 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나 ()영역이나 판단여지 영역에 적용. 기속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p> <p>나. 2. () 불요설과 필요설이 대립한다. 행정규칙을 법규로 인정할 수 없는 바 필요설이 타당. 판례도 필요설 입장.</p> <p>다. 3. ()</p> <p>3. IV. 한계 선행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률적합성원칙에 의해 적용되지 않음. 선행관행 후 선행관행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p> <p>4. IV. 효과 - 위헌, 위법 자기구속원칙에 반한 법률, 법규명령, 조례규칙 - 헌법 제11조 위반으로 위헌 자기구속원칙에 반한 구체적 공법작용 - 위법</p>
관련된 기출문제 또는 판례문제	<p>甲은 “유정주유소는 X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상원주유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X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규모와 판매량이 유사한데다가 甲과 동일하게 1회 위반임에도 상원주유소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15일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는데 자신에게만 사업정지 3개월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2013. 5. 초순경에 주유소 지하에 있는 휘발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면서 휘발유보다 값이 싼 경유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였는데 그때 부주의하여 경유를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휘발유를 공급받다 보니 휘발유에 경유가 조금 섞이게 된 것으로, 개업한 후 처음 겪는 일이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p> <p>갑에 대한 사업정지 3개월처분은 위법한가? (2017년 변호사시험)</p>

	5급공채	변호사시험	사법고시	입법고시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2017년(부당결부금지원칙) 2016년(실권, 신뢰보호, 비례) 2014년(실권, 신뢰보호, 비례) 2013년(비례원칙)	2019년(소급입법금지, 소급적용금지, 신의성실원칙) 2016년(비례원칙) 2016년(실권, 신뢰보호, 비례) 2014년(자기구속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복수운전면허취소)	2017년(신뢰보호원칙)	2013년(비례원칙)
공권(협회의 행정개입청구권 등)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등), 부당이득		2014년(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수리처분시 양도인에게 사전통지 안거친 경우 하자가 있는지)	2017년(등록의 법적성질) 2015년(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행정입법		2015년(고시의 법적성질) 2014년(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법적 통제수단)		2015년(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13년(고시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행위의 종류	2019년(대통령의 대학총장임명의 요건으로 적격성 판단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지 및 판단여지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2018년(별채허가가 강학상 허가로서 지속행위여서 법에 근거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는가) 2017년(추진위원회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2016년(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16년(공익상 이유로 한도로점용허가의 위법여부)	2017년(제재처분사유 승계) 2013년(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2014년(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해제조치의 법적성질. 당구장과 피씨방의 금지의 정도)
행정행위의 부관	2017년(부관의 종류 및 부관의 위법여부) 2016년(부관의 가능성) 2013년(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2016년(부담과 기한, 철회권유보)		
행정행위의 효력	2014년(선결문제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2013년(금전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방법)	2018년(선결문제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2016년(형사법원과 선결문제)	2016년(금전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방법) 2015년(금전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방법) 2014년(금전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방법)	
행정행위의 하자	2016년(철회의 제한) 2015년(하자승계-사업인정과 수용재결) 2014년(철회의 제한) 2013년(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8년(위헌결정의 소급효) 2017년(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017년(하자승계) 2016년(철회의 제한) 2014년(하자의 치유)	2016년(금전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방법) 2015년(금전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방법) 2014년(금전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방법)	2015년(하자승계) 2014년(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위법성정도, 집행력)

사전결정, 가행정행위				
확약			2017년	
공법상 계약			2017년(2015두41449 판결)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2018년			
경고				
행정계획		2013년(도시군관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행정절차	2018년(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2013년(거부처분시 사전통지 등 불이익처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13년(거부처분시 사전통지 등 불이익처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보공개	2015년(정보공개방식 및 비공개정보여부)			
행정의 실효성화보수단		2018년(세무조사)	2016년(건물토지반환불이행시 대집행가능한가) 2016년(즉시강제 및 권리구제수단) 2015년(행정조사시 실효행사가능여부 및 권리구제수단) 2014년(세무조사의 법적성질,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국가배상	2019년(배상책임자, 영조물책임) 2013년(선결관계)	2018년(선결관계) 2015년(선결관계)	2016년(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2013년(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014년(선결관계) 2013년(선결관계)
손실보상				
행정심판	2016년(공무원)	2018년(4유형에서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수단)	2014년(거부처분취소재결시 재처분의무)	2014년(임차인의 금지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2014년(거부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의 인용의 차이점)
행정소송의 종류			2013년(예방적 부작위소송 인정여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대상적격	2018년(행정지도가 처분에 해당하는가) 2016년(이행강제금 독촉이 처분인가) 2015년(원처분주의) 2014년(개선명령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여부) 2013년(변경처분시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2019년 2018년(세무조사가 처분인가) 2016년(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여부) 2014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2017년(변경처분, 협약 해지통보) 2013년(변경재결시 소의 대상)	
원고적격	2017년(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시 임원)	2019년 2016년(불법도로점용한 자가 다른 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원고적격)	2015년(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 주민)	

협회의 소의	2017년(임기만료) 2013년(제재처분의 소멸과 협회의 소의)	2015년(제재처분의 소멸과 협회의 소의)	2013년(제재처분의 소멸과 협회의 소의)	2013년(제재처분의 소멸과 협회의 소의)
피고적격	2014년(4유형에서 원고적격, 경원자소송)		2014년(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권한내부위임시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2019년		
소의 변경				
소송참가				
가구제		2013년(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행정소송의 심리절차				
위법판단기준시				
처분사유 추가변경	2018년			
취소소송의 판결 기판력				
형성력(제3자효)				
기속력	2014년(거부처분취소판결 후 부작위시 위법여부)	2013년(거부처분취소판결 후 2차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간접강제	2014년(거부처분취소판결 후 부작위시 대응수단)	2013년(거부처분취소판결 후 부작위시 대응수단)		
취소소송의 종료 무효확인소송		2018년(보충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조직법		2017년(권한재위임)		
공무원법	2018년(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2016년(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2013년(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사실상 공무원 이론, 해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구제수단)		2013년(소청결정의 효력 - 형성력)	2015년(복종의무)
지방자치법	2019년(직무이행명령) 2017년(주민소송) 2016년(주민소송) 2014년(조례의 위법여부 및 통제수단)		2016년(조례의 위법여부 및 통제수단)	
경찰행정법	2013년(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2014년(소원도 운석전시로 행인들이 모여 교통소통위협시 경찰책임자)
공물법	2017년(공물의 특별사용)		2016년(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토지행정법				
공용부담법	2015년(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잔여지수용)		2017년(환매권) 2014년(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송)	2013년(보상금증감 청구 소송)
환경행정법			2015년(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의해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